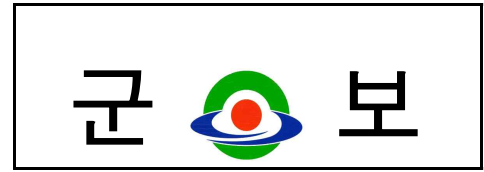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1호 2023. 6. 15.(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2호)
- 간방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3호)
- 괴당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4호)
- 능천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5호)
- 만화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6호)
- 우감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7호)
- 황지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3-88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 고시 제2023-82호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15.

예 천 군 수

1. 규약목적

경북도청 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양지자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신도시가
지방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도시로의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명칭(제1조)
-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제4조)
-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제5조)
- 라.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제4조)
- 마.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제14조)

3. 문의사항

경북도청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 행정지원실(☎054-650-60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경북도청 신도시(이하 ‘신도시’ 라 한다)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 양지자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신도시가 지방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도시로의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회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조직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예천군과 안동시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회장은 윤번제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소집 등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회장 및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 시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신도시 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활동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 및 가로수 등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의 신설·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4.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8. 건축물 경관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9. 대학·병원·공공기관 및 기업·단체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10. 양 지자체 상호 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1.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방법) ① 회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 안건의 의결은 회장과 회원 모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매년 상·하반기 중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회원의 요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 안건을 준비하여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 결과를 관계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 사군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협의회회의 간사는 회의록 등 의결·활동 사항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협의사항 처리 등)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제11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사항과 관련되는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사군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은 각 시·군의 협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지출은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간사가 지출하며,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결산 결과를 연 1회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6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칙) 본 규약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3호

간방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간방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간방1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보문면 간방1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안길 정비, 하수도 정비
 - 지역역량강화 : 노래교실, 생활공예교실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4호

괴당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괴당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괴당2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풍양면 괴당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다목적광장 조성, 마을안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건강체조교실, 수지침교실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5호

능천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능천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능천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소공원 조성, 마을안길 정비
 - 지역경관개선 : 우물정비, 보호수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마을가꾸기 교육, 마을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6호

만화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만화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만화2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만화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경로당 리모델링, 마을안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 : 화합문화교실, 경관가꾸기교육, 재해재난안전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7호

우감2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우감2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우감2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개포면 우감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광장 조성, 마을안길 확포장
 - 지역경관개선 : 클린하우스 정비, 꽃길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아버지 요리교실, 마을가꾸기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고시 제 2023 - 88호

황지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황지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황지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가드레일 설치, 가로등 및 CCTV설치
 - 지역경관개선 : 마을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문화교실, 경관교실, 재난재해안전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7. 사업시행기간 : 2023년 ~ 2024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